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직원 채용 공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경기요양병원장

I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근무기관 :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 : 경기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 채용예정인원 : 총 1명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 채용직급·직렬 및 근로조건

○ 공무직(요양보호사) 1명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근로자

* 근무형태(기관운영상 근무형태 변경 가능)

구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요양보호사	○ 1일근무 2일휴무	07:30 ~ 익일07:30	○ 근무시간 16h, 휴게시간 8h * 야간 휴게시간 4h

* 보수수준 : 월 1,952천원 수준(세전, 식대포함 금액이며, 상여 및 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름)

II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모 자격”에 대한 요건 심사) → 면접 및 인성검사 전형 → 서류검증 → 최종

- 1 -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

III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안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대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직렬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IV 우대사항

-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또는 의사자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 2 -

V 전형절차

1. 접수(자기소개서 포함) 및 서류전형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접수

- 접수기간 : 2021. 9. 16.(목) ~ 9. 23.(목) 13: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 당일 13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접수처 : 소속기관 인사담당

소속기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경기요양병원	031-371-5225	gyeonggi9in@kcomwel.or.kr

현 직장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2-1], 자기소개서[붙임 2-2], 내신성적 확인서[붙임 2-3]
내신성적 확인서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한하여 제출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경기요양병원-요양보호사)**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경기요양병원-요양보호사)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PC에서 후 출력하여 응시원서 하단 서명(붙임) 후 스캔**
 → 1개의 PDF 파일로 병합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5배수 (※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05점)

구분	서류전형(정량평가 100점 만점)		사회형평요소 우대 (최대가점 5점)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요양보호사	○ 학교성적(30점)	○ 직무경력(30점) ○ 전산자격(20점) ○ 전문자격(20점)	○ 장애인, 산재, 의사자(5점) ○ 기타(5점)

* 사회형평요소 우대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한가지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해당분야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① () 최종학교를 기준으로 평가

- (대학교 이상) '전체평균' 학점으로 점수 평가

- 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학교로 인정
- ③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성적만 산정
- ④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⑤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후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⑥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이수 성적만 전체평균으로 산정

-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등) 응시자가 5개 교과구분 영역에서 **각 1개 교육과목씩 총 5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 5개 교육과목 성적의 합계로 평가

교과구분 영역	교 육 과 목
국어	국어, 국어 I, 국어 II,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등
영어	영어, 기초영어, 실용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독해, 영어작문, 실용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등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통계, 자연수학, 기하와 벡터, 수학의 기본, 확률, 통계, 확률과 통계 등
사회	사회, 통합사회, 한국사(국사), 사회문화, 법과정치,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경영, 동아시아사, 정치, 정치와법,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와 윤리 등
과학 또는 전문교과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물리(학) I, 화학, 화학 I, 화학 II, 지구과학,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생명과학(생물), 생명과학(생물) I, 생물과학(생물) II,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정보통신, 회계, 회계원리, 전산회계, 컴퓨터 일반 등

* 각 교육과목 성적은 한학기로 산정(단, 성적증명서에 학년 성적만 기재된 경우 학년 성적을 선정)

※ (적용기준) 해당과목의 내신등급, 성취도, 점수구간, 석차, 5등급제가 있는 경우, ①내신등급, ②성취도, ③점수구간, ④석차, ⑤5등급제 순으로 적용기준을 적용

1과목당 배점	6.0	5.2	4.4	3.6	2.8	2.0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	6~7등급	8~9등급
성취도	A+	A	B+	B	C+,C	D+이하
점수구간	95점 이상	95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5점 이상	85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석차 (등수(인원) * 10)	4% 이하	4% 초과 ~ 11% 이하	11% 초과 ~ 23% 이하	23%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9% 이하	89% 초과
5등급제	수	-	우	-	미	양, 가

※ 적용기준은 한가지로 통일(1개 과목은 '내신등급'으로, 다른 1개 과목은 '점수구간'으로 기재 불가)

- ② (직무경력) 채용 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 이후,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합격 이후 증빙서류 제출필요** , 경력증명서 원본)
- ③ (전산자격)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④ (전문자격) 해당 자격증 소지자

구분	항목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1급·2급, 간호조무사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모든 전형의 응시자격, 학교성적, 직무경력, 전문자격, 전산자격 등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9. 24.(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2. 및 증빙서류 제출

1) 면접전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자 : **2021. 9. 28.(화) ~ 9. 29.(수) 예정**
- 면접장소 : 경기요양병원
 -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해결, 자원관리, 직업윤리 등), 직무수행능력(공단이해도, 직무이해도, 지원 동기 및 자기개발) 등 평가
 - * NCS 기반 직무기술서는 [붙임 3] 참조
 -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인성검사
 - (실시일자 및 방법) 면접전형 당일 별도 장소에서 PC로 실시
 - (검사내용) 자기조절역량, 도덕역량, 대인관계역량 등을 파악

2) 증빙서류 제출 목록(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면접전형 직후) 직접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사항	① 해당 채용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 편입의 경우, 편입이후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 전공심화의 경우, 전공심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에 한함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②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④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의사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⑤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사본 ⑥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⑦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시),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⑨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⑩ (직무경력) 해당직군 업무 관련 경력증명서(퇴직한 경우) 또는 재직증명서(재직중인 경우) ⑪ (전산가점) 정보화자격증 사본 ⑫ (전문가점) 채용공고상 반영된 해당직군 별도 추가자격요건 관련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3.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1)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및 인성검사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 점수를 제외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9. 30.(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2)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등록기간 : 2021. 9. 30.(목) ~ 10. 7.(목) 예정
- 임용등록시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

3) 임용일 : 2021. 10. 13.(수) 예정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임용기간은 합격자발표 후 1년으로 한다.

VI 채용 이의신청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4)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피해자 구제
 - 이의 신청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 가능

- 7 -

VII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합격자에 따른 채용 비위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공무원의 경우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후 공단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1-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